

7월 말부터 원도급자,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·회계자료 요구 못해

오는 7월 하순부터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(수급사업자)에게 원가정보나 회계자료, 타사업자와의 거래·매출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(7월17일)에 앞서 '하도급법상 오

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' 제정안을 마련해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.

개정 하도급법은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.

공정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경영

정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총 6가지 요구 금지 정보의 종류를 규정했다.

원가계산서나 원가내역서, 원가명세서, 원가산출내역서 등이다. 재료비나 노무비 등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자료 역시 요구를 금지했다. 봉송권기자

안전한 대한민국,
적정공사비에서 시작됩니다!

전국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

2018년 5월 31일

오후1시30분 여의도 국회 앞

주최



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
The Federation of Construction Associations

※ 참가: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, 해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건축사협회, 대한건설기계협회, 한국골재협회,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, 한국건설기술인협회, 한국엔지니어링협회, 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,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, 엔지니어링공제조합, 한국부동산개발협회,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, 한국소방시설협회, 한국전기공사협회,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, 한국지하수·지열협회

※ 후원: 대한토목학회, 대한건축학회, 한국건설관리학회, 한국건설안전학회,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